

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및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17년 1월 3일(화)

□ **대상 펀드:**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□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 명칭	종류 신설	<u>(신설)</u>	<u>종류 C-P (BK976)</u> <u>종류 C-P2 (BK977)</u> <u>종류 S-P (BK978)</u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 명칭	종류 신설	<u>(신설)</u>	<u>종류 C-P (BK976)</u> <u>종류 C-P2 (BK977)</u> <u>종류 S-P (BK978)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. 종류형 구조	종류 신설		종류 C-P, 종류 C-P2, 종류 S-P 신설에 따른 내용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3년 변동성 수치 업데이트	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<u>(2015.12.31)</u> 기준 3년 변동성은 <u>10.32%</u> 이며, 이러한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	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<u>(2016.12.31)</u> 기준 3년 변동성은 <u>10.99%</u> 이며, 이러한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가. 매입, (3)종류별 가입자격	기존 가입자격 문구 정정 및 종류 신설에 따른 문구추가	- 종류 C-w: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(WRAP Account) 또는 특정금전신탁 - 종류 I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</u> , 50 억 이상 개인, 75 억 이상 법인	- 종류 C-w: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 (WRAP Account), 특정금전신탁 또는 <u>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제 3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</u> - 종류 I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50 억 이상 개인, 75 억 이상 법인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종류 C-P: (신설)</u> - <u>종류 C-P2: (신설)</u> - <u>종류 S-P: (신설)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종류 C-P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 - <u>종류 C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</u> - <u>종류 S-P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권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종류 신설	<u>(신설)</u>	<p>종류 C-P/ 종류 C-P2/ 종류 S-P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선취판매수수료: 없음</u> - <u>후취판매수수료: 없음</u> - <u>환매수수료: 없음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종류 신설에 따른 비용 및 보수 업데이트	<u>(신설)</u>	<p><u>종류 C-P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20%</u> - <u>판매회사보수: 연 0.80%</u> - <u>신탁업자보수: 연 0.04%</u>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</u> <p><u>종류 C-P2: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20%</u> - <u>판매회사보수: 연 0.70%</u> - <u>신탁업자보수: 연 0.04%</u>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</u> <p><u>종류 S-P: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20%</u> - <u>판매회사보수: 연 0.20%</u> - <u>신탁업자보수: 연 0.04%</u>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</u> <p><u>(1,000만원 투자예시표 업데이트)</u>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나. 과세,	연금계좌 신설에 따른 과세 사항 업데이트	<u>(신설)</u>	<p><u>(4)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u></p> <p><u>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(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, 이하 '연금계좌'라 한다)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</u></p>

			<p>며,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.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하단 표1 참조</p>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표1]

[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
연금수령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-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(다만, 이연퇴직소득은 제외) -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
세액공제	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(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단, 종합소득금액 4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)인 경우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적용
연금수령시 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: 연금소득으로 과세, 세율 5.5~3.3% (지방소득세 포함, 연령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-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: 연금소득으로 과세, 이연퇴직소득세의 70%
연금외수령시 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: 기타소득으로 과세, 세율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-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: 퇴직소득으로 과세, 이연퇴직소득세

□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종류 신설	(신설)	<p>종류 C-P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20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80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4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 <p>종류 C-P2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20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70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4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 <p>종류 S-P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20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20%

			- <u>신탁업자보수: 연 0.04%</u>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</u>
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, 1. 과세	종류 신설에 따른 과세 문구 추가	<u>(신설)</u>	③ <u>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(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, 이하 '연금계좌'라 한다)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.</u>

□ **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**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3항	종류 신설	<u>(신설)</u>	<u>11. 종류 C-P 수익증권</u> <u>12. 종류 C-P2 수익증권</u> <u>13. 종류 S-P 수익증권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제1항	종류 신설	<u>(신설)</u>	<u>11. 종류 C-P 수익증권</u> <u>12. 종류 C-P2 수익증권</u> <u>13. 종류 S-P 수익증권</u>
제25조(판매가격) 제1항	종류 신설 및 기존 가입자격 문구 정정	<u>8. 종류 C-w: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(WRAP Account) 또는 특정금전신탁</u> <u>9. 종류 I: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9조 제5항 제4호,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, 50억 이상 개인, 75억 이상 법인</u> <u>11. 종류 C-P: (신설)</u> <u>12. 종류 C-P2: (신설)</u> <u>13. 종류 S-P: (신설)</u>	<u>8. 종류 C-w: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 (WRAP Account), 특정금전신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</u> <u>9. 종류 I: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9조 제5항 제4호,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50억 이상 개인, 75억 이상 법인</u> <u>11.종류 C-P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 <u>12. 종류 C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</u> <u>13. 종류 S-P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</u>

			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제39조(보수) 제3항	종류 신설	<u>(신설)</u>	<p><u>(종류 C-P)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: 연 0.20%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: 연 0.80%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 : 연 0.04%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<u>: 연 0.025%</u></p> <p><u>(종류 C-P2)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: 연 0.20%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: 연 0.70%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 : 연 0.04%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<u>: 연 0.025%</u></p> <p><u>(종류 S-P)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: 연 0.20%</u></p> <p>2. <u>판매회사: 연 0.20%</u></p> <p>3. <u>신탁업자 : 연 0.04%</u></p> <p>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<u>: 연 0.025%</u></p>
제52조 (수익증권 의 통장거래)	종류 신설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 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 또는 " <u>연금저 축계좌설정약관</u> "에 따라 통장거래 등 을 할 수 있다.